

♣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【 목 적 】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(장기요양급여수급자)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.

【 계약기간 】

- ① 계약기간은 입소일부터 장기요양등급인정 유효기간으로 한다.
-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.
- ③ ‘제공자’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‘이용자’ (또는 ‘대리인’)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, ‘이용자’ (또는 ‘대리인’)는 이후 15일 이내에 ‘제공자’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.
-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‘이용자’ (또는 ‘대리인’)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. (단, 시설 정원이나 이용자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한다.)
-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(장기요양 인정등급, 장기요양 급여비용, 비급여비용 등)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.
- ⑥ ‘이용자’ (또는 ‘대리인’)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.

◇ 시설급여 (1일)

구 분		1등급	2등급	3~5등급
요 양 급 여	노인요양시설 (구 노인복지법)	71,900	66,710	61,520
	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	63,050	58,510	53,930
비 급 여	상급침실 이용료	1인실 : 10,000원, 2인실 : 5,000원		
	식재료비 (1식)	3,200원		
	간식비 (2회)	1,400원		
	계약의료비	개별		

※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(위원장 : 보건복지부 차관)가 결정, 고시하는 「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」(보건복지부 고시)에 따름

♣신원 인수의 권리·의무 계약의 해제

【 계약자 의무 】

이용자' 와 '제공자' 그리고 '대리인' 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.

① '이용자' 의 의무

1. 월 이용료 납부
2.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
3.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
4.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
5.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

② '시설' 의 의무

1. '이용자' 의 건강관리 협조
2. '이용자' 의 신변이상을 '대리인' 에게 즉시 연락
3.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,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
4.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
5. 기타 '이용자' 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

③ '대리인 또는 보호자' 의 의무

1. '이용자' 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
2. '이용자' 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
3.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
4. '이용자' 의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'제공자' 에게 통보
5.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

【 계약해지 요건 】

① '이용자' 의 해지

1. '이용자' 와 '대리인' 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, 제2조 제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'제공자'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.

② '제공자' 의 해지

1. '이용자' 의 건강진단 결과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
2.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
3. '이용자' 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(단, '제공자' 은 '이용자' 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'이용자' 또는 '대리인' 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)
4.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.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(보험료 포함)수가의 1/4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.
5. '이용자' 는 10일 이상 입원 중 1개월을 초과하는 장기입원을 하게 되거나 시설 내 입소 대기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'제공자' 와의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.